

특별호

발행인: 신현규
발행일: 2015.04.23



발전노동자

<http://baljeon.nodong.net>

- 민주노조 사수
- 임금체계개약 저지
- 생존권 사수
- 전력산업공공성 강화
- 해고자 원직복직

통상임금 청구소송에 대한 오해와 진실

4월 22일 남동노조 사무장이 남동발전 직원들에게 메일을 발송하였습니다. 이 메일에는 통상임금 청구소송 진행 경과와 남동노조의 계획이 담겨 있는 바, 사실 관계를 오인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이를 바로잡는 동시에 통상임금 청구소송에 대해 상세히 알리고자 합니다. 기술의 편의상 사무장의 메일 내용을 요약하고, 이에 대해 항목별로 이해를 설명합니다.

1. 2012년 6월 22일 작성된 남동노조와 회사의 합의서는 단체협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전 3년에 대해 발전노조 소송결과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된다.

☞ 발전노조는 노사간의 합의서가 단체협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발전노조가 우려하는 이유는 법적 효력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합의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여러 곳에서 감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재부가 예산을 승인하지 않고 있으며, 간부들의 입에서도 공공연히 합의서 이행에 대한 부정적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발전노조는 회사노조들에 대해 회사로부터 합의서를 이행하겠다는 공문 등을 재차 받아내고, 예산 편성 내역을 확인해서 합의서의 실효성을 확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회사노조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증거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 실제로 많은 노동조합들에서 단체협약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법률적 검토 내용은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하여 여기서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서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검색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2013.12.28 전원합의체 이후에 대해서는 전직원이 통상임금 적용을 받으며, 노사간 합의가 안될시 2015.12.22 전까지 소송을 진행하면 되나, 중앙에서는 2015.6.22 이전에 소송 진행할 것임(합의서 내용증명 법원 제출시 6개월간 채권 소멸 중지 가능함). 결국 남동노조는 2012.6.22 ~ 2013.12.18 기간에 대한 통상임금 지급에 대해 2015.12.22 이전에 회사와 합의하고, 합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진행

☞ 2013.12.28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판결 내용을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라는 것은 하급심의 판단 기준이 될 뿐, 절대적인 원칙이 아닙니다. 이는 마치 이전에 간통죄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있었다고 해서, 간통을 하는 순간 무조건 범죄가 확정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치입니다. 간통에 대해 배우자가 고소하고, 검사가 기소해서, 재판을 통해 판결이

나야 비로소 범죄가 확정되는 것입니다.

☞ 발전노조 소송 결과에 따른다는 노사합의서가 이행된다면, 별도의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발전노조는 애초에 2009.6월부터 2012.6월까지의 기간에 대한 통상임금 청구 소장을 접수했으며, 소송 과정에서 ‘청구취지 확장’을 통해 2012.12월까지의 통상임금을 추가했습니다. 그러므로 조만간 2009.6월부터 2012.12월까지의 통상임금에 대한 판결이 날 것이며, 회사가 항소한다면 항소심 과정에서 2013.1월 이후의 기간에 대해 ‘청구취지 확장’을 하면 되므로 별건 소송이 필요치 않습니다. 물론 회사가 항소하지 않고 노사합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2013.1월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별도 소송이 진행되며, 이 경우에는 회사노조도 별도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남부발전의 경우 회사가 항고한 부분은 2012.08월부터 2013.12.18.까지로 이 기간에는 법적 판단이 없으므로 지금 불가하다고 해석, 소송 진행중이다.

☞ 남부발전노조는 933명의 조합원이 2009.7월부터 2012.6월까지 11,646,424,592원의 통상임금을 청구하였고, 법원이 9,649,450,696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물론 남부노조는 발전노조와 달리 청구취지 확장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012.08월부터 2013.12.18.까지의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남부노조 조합원들이 청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애당초 남부발전이 항소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남부발전 항소 이유는 1심의 주장을 반복하는 데 불과할 것입니다.

4. 발전노조는 정확한 진실을 숨긴 채 각종 의혹 증폭으로 조합원 마음을 흔들게 아니라, 발전노조 소송이 남부노조에 비해 늦어지는 사실을 정확히 고하고, 소송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

☞ 애당초 발전노조의 소송도 2015.1.15. 남부노조 사건과 함께 선고기일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고를 이틀 앞둔 2015.1.13.에 법원이 돌연 발전노조 사건의 선고기일을 연기하고 ‘석명준비명령’이란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발전노조 소송은 발전노조 3건 + 한수원노조 2건의 사건이 병합된 것입니다. ‘석명준비명령’에서는 회사마다 수당계산 방식과 금액이 약간씩 차이가 나는 이유와 한수원노조 자료의 일부 오류에 대한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석명준비명령’에서는 발전노조가 회사노조의 노사합의서를 근거로 2차, 3차 소송자들의 청구기간을 1차 소송자와 동일하게 2009.6.1.부터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재차 확인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들은 이미 재판과정에서 발전노조가 충분한 근거를 제시한 내용이었는데, 재판부가 방대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판결문 작성에 애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쨌든 발전노조는 법원이 명령한 2015.2.3.까지 답변과 근거자료 일체를 제출하였으며, 소송 마무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남동노조는 발전노조가 진실을 숨긴다고 주장하지 말고, 남동노조가 생각하는 진실을 정확한 FACT에 근거해서 얘기해야 할 것입니다. 판단은 조합원들이 하며, 언제까지 조합원들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최초에 의혹을 제기한 것은 발전노조가 맞지만, 조합원들 사이에서 의혹이 점점 증폭되는 것은 회사노조들이 제대로 된 답변을 회피하면서 근거자료들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이며, 발전노조의 주장이 보다 더 설득력 있기 때문 아닐까요? <끝>